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85
----------	------

2017년 8월 30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1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7년 8월 30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)

가. 제안이유

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기금의 존속기한은 “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를 “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로 변경(안 제2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없음

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해당없음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
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갈등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(2017. 6. 22. ~ 7. 12.) 결과: 제출의견 없음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한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.
-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시도(市道)의 굴착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굴착복구비, 감리비,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.
- 최근 5년간 기금의 결산 내역을 보면, 평균 231억 수준의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으며, 평균 163억 수준의 예치금을 유지하고 있어 매년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
[표]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지현황(2012~2016)

구 분	2012년도 (결산)	2013년도 (결산)	2014년도 (결산)	2015년도 (결산)	2016년도 (결산)	평균	
수 입 액	23,286	20,835	22,675	25,709	23,235	23,148	
원인자부담금	22,523	20,248	22,143	25,240	22,828		
이자수입 등	763	587	532	469	407		
지 출 액	24,496	19,671	23,313	24,268	24,029	23,155	
굴착복구공사	소 계	23,446	19,086	22,953	23,818	23,777	
	직접복구비	18,650	14,238	18,238	17,717	17,450	
	사후정비비	4,291	4,187	4,167	5,553	5,568	
	감리비및부대비	505	661	548	548	759	
	시스템 유지운영 등	1,050	585	360	450	252	
증 감	감 1,210	증 1,164	감 638	증 1,441	감 794		
예치금	15,298	16,462	15,824	17,265	16,471	16,264	

- 이에 서울시는 존속기한 만료('17.12.31.)를 앞두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이하 ‘법’)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¹⁾를 거쳐 금회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,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개발, 재건축,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개·보수 등의 도시재생에도 도로굴착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이고 도로안전의 위협요소인 포트홀(pot-hole)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고유한 목적(굴착 복구 및 사후관리) 달성을 지속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.

1) 2017년 제2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(재정관리담당관-6999, 2017.6.16.)
‘기금 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(안)’ 원안가결

- 참고로, 현행 조례 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²⁾는 2012년 조례개정 시 법 제4조에 의거해 신설된 것으로 당시 서울시는 존속기한이 없는 기금들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을 설치하는 조례 8건을 일괄 개정한 바 있으며, 추가적으로 조례 3건이 별도로 개정되어 총 11건의 기금이 일몰제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음.
- 이 중 존속기한 만료('17.12.31.)를 앞둔 8건의 개정안이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 제출된 상황임([표] 참조).

[표] 존속기한 연장 건

연번	주관부서	안건	현행 조례상 존속기한	현황
1	대외협력 담당관	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	2017.12.31.	개정안 제출 (2017.8.14.)
2	예산담당관	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7.12.31.	개정안 제출 (2017.8.14.)
3	재정담당관	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7.12.31.	개정안 제출 (2017.8.14.)
4	소상공인 지원과	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7.12.31.	개정안 제출 (2017.8.14.)
5	복지정책과	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7.12.31.	개정안 제출 (2017.8.14.)
6	여성가족 정책담당관	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7.12.31.	개정안 제출 (2017.8.14.)
7	도로관리과	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7.12.31.	개정안 제출 (2017.8.14.)
8	체육정책과	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7.12.31.	개정안 제출 (2017.8.18.)
9	환경정책과	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	2022.12.31.	개정 완료 (2017.7.13.)
10	사회적경제 담당관	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	2021.12.31.	개정 완료 (2016.9.29.)
11	국제교류 담당관	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	2018.12.31.	개정 예정

2) 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6. 토론요지 : 없 음

7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7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